

의안번호	제 40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4월 13일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8
----------	-----

발의연월일 : 2020년 4월 13일

발 의 자 : 박우양·임영은·박문희·이상식·
이상정·이의영 의원(6인)

1. 제안 이유

- 도지사는 5년 마다 동물복지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

2. 주요 내용

-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맹견의 정의 추가(안 제2조)
-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3조)
- 적절한 사육관리를 위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안 제4조의2)
-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규정 신설(안 제9조)
-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의 추가(안 제11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5. 예산조치 : 해당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축수산과와 협의완료

7. 입법예고 : 2020.3.31. ~ 2020.4.9.(1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맹견”이란 도사견, 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3.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적정한 사육·관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

나.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라.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제9조를 제9조의2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11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 -----.</p> <p>1. ~ 3.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맹견”이란 도사견, 핏블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p> <p>제3조(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p> <p>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p> <p>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p> <p>2.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예산 및 자원</p> <p>3.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p> <p>① ~ ④ (생략)</p> <p><신설></p>	<p>제3조의2(등록대상동물의 등록)</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적정한 사육·관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p> <p>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p> <p>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p> <p>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p> <p>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p> <p>나.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큰 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p> <p>라.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p> <p>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현행	개정안
<p>제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④ (생략)</p> <p>제11조(수수료) 1. ~ 5. (생략)</p> <p><신설></p> <p>6. (생략)</p> <p>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p>제9조의2(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수료) 1. ~ 5. (현행과 같음)</p> <p>6.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p> <p>7. (현행과 같음)</p> <p>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관계 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